

재해일자	2015년 3월 3일	재해현황	사망 1명
작업명	숫가마 보수작업	재해장소	목초액 저장탱크

재해발생 개요



[재해발생장소 전경]

2015년 3월 3일 16:00경 ○○숫가마에서 2층에서 숫가마 보수작업을 완료한 재해자가 창문을 통해 외부 목초액 저장탱크로 뛰어내렸으며 탱크상부가 파손되어 탱크내부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탱크 내부에서 익사한 재해임

재해발생 원인

1. 출입의 금지 등 미실시

-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해야 함

2. 안전한 통로 미확보

-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

[참 고] 작업공간 평면도

- 상부가 파손된 사고탱크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50ppm 수준이었으나, 파손되지 않은 유사탱크에서는 **1,000ppm 이상** 측정됨
(※일산화탄소 급성중독량(IDLH)는 1,200ppm)

측정위치	산소	CO
유사 탱크내부 1.5m 지점	20.3%	1,000ppm 이상

재해예방 대책

1. 출입의 금지 등 안전조치 실시(안전보건규칙 제20조)

-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

2. 안전한 통로 확보(안전보건규칙 제22조)

-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